

소방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 · 공포 시행 안내

대통령령 제19090호

소방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005. 10. 20 공포됨에 따라 그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불을 사용하는 설비에 대한 세부관리기준을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석탄·목탄류를 발전용으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특수가연물 저장 및 취급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석탄 등 발전연료를 충분히 비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제5조제2항 신설)

- (1) 보일러·난로 등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이 마련되지 아니하여 이를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2) 보일러·난로 등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을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함.
- (3)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보일러·난로등을 사용하는 다중이용업소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됨.

나.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제7조제2호 단서 신설)

- (1) 석탄·목탄류를 현행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기준을 적용하여 발전(發電)용으로 저장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동 연료의 재고량 축소로 인하여 발전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음.
- (2) 발전소에 화재방지를 위한 자동살수장치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석탄·목탄류를 발전용으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특수가연물 저장 및 취급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 (3) 특수가연물 저장 및 취급기준 적용대상에서 발전용 석탄·목탄류를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발전용 저탄량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 후 3월 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축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공포 시행 안내

건설교통부령 제475호

건축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2005. 10. 20 공포됨에 따라 그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정보
ACT INFORMATION

1. 개정이유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19092호, 2005. 10. 20. 공포·시행)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설치하는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의 면적 중 건축면적에 산입하는 면적을 정하는 한편, 1999년 이래 동일한 금액으로 유지되어 온 건축허가 수수료의 범위를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돌출차양의 면적 중 건축면적에 산입하는 면적(제43조제2항 신설)

- (1) 종전에는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설치하는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이하 “돌출차양”이라 한다)의 면적 중 3미터까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나, 컨테이너 길이는 3미터를 초과하기 때문에 돌출차양을 그 이상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돌출차양이 건폐율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여 물류시설 건축에 어려움이 있었음.
- (2) 돌출차양의 면적 중 건축면적에 산입하는 면적은 당해 돌출차양을 제외한 창고의 건축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면적으로 하도록 함.

(3) 창고시설의 토지이용도를 높여 물류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나. 건축허가 수수료의 범위(별표 4)

1999년 이래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 수수료가 조정되지 아니하여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처리가 부실화될 우려가 있는 바, 이를 평균 45 내지 50 퍼센트 정도 인상하여 현실화함.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 개정·공포 시행 안내**

산업자원부령 제305호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이 2005. 10. 13 공포됨에 따라 그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이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7284호, 2004. 12. 31. 공포, 2005. 7. 1. 시행)되어 신·재생에너지설비 성능검사비용에 대한 지원제도와 신·재생에너지기술 사업화에 대한 지원제도 등이 도입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설비 성능검사비용의 지원대상과 신·재생에너지기술 사업화의 지원절차 등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재생에너지설비 성능검사비용의 지원대상(제8조)

산업자원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이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을 받기 위하여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성능검사를 받는 경우 성능검사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신·재생에너지기술 사업화의 지원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신·재생에너지기술 사업화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신청서에 사업계획서, 사업화하고자 하는 신·재생에너지기술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와 당해 신·재생

에너지가 지원신청 당시 아직 사업화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은 시제품 제작 및 설비투자의 경우에는 소요자금의 10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융자 지원을 하며, 교육 및 홍보 등의 경우에는 소요자금의 8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공포 시행 안내

산업자원부령 제306호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이 2005. 10. 11 공포됨에 따라 그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정보
ACT INFORMATION

1. 개정이유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의 개정(법률 제7441호, 2005. 3. 31. 공포, 2005. 10. 1. 시행)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19064호, 2005. 9. 30. 공포, 2005. 10. 1. 시행)으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정기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확대(제3조·별표 2 및 부칙 제2항)

신개발품 및 신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사고 및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칼 등 주방용전동기기, 전기욕조 및 전기훈증살충기 등 17개 품목을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으로 추가하여 2007년 3월 1일부터 안전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

나. 안전인증의 면제(제9조제1항)

시·도지사 또는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로부터 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을 받음으로써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으로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는 수출전용의 전기용품,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전기용품, 학교·연구소 또는 연구기관이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는 전기용품 등을 규정함.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 · 공포 시행 안내

노동부령 제240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2005. 10. 7 공포됨에 따라 그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평생건강관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 건강진단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작업환경측정주기 단축 대상의 합리적 조정(제93조의4)

- (1) 다수의 작업장으로 구성된 사업장 가운데 일부 작업장에서 일부 유해인자가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전체 사업장의 모든 유해인자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주기를 단축함에 따라 사업주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음.
- (2) 작업환경측정주기의 단축대상을 당해 유해인자에 대하여 노출기준 등을 초과한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으로 한정함.
- (3) 작업환경측정주기의 단축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법령 준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채용시 건강진단 실시의무 폐지(현행 제98조제1호 삭제, 제98조의2)

- (1) 이미 채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유해부서 배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채용시 건강진단이 오히려 사업주가 질병이 있는 자의 고용기회를 제한하는 채용 신체검사로 잘못 활용되는 문제점이 있음.
- (2) 사업주에게 부과된 채용시 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폐지함.
- (3) 채용시 건강진단을 통한 고용기회의 제한 및 규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다.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조정(제98조제3호, 별표12의2 신설)

- (1)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새로운 독성 및 만성적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인자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검진의 실효성이 없는 유해인자가 포함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음.
- (2) 근로자에게 만성적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새로운 유해인자를 추가하고, 실효성이 없는 유해인자를 제외하는 등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를 조정함.
- (3) 유해물질 취급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특수건강진단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라. 건강관리수첩 교부대상 확대(별표 14의2 신설)

- (1) 건강관리수첩 교부대상에 발암성 물질인 니켈, 카드뮴, 벤젠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음.
- (2) 직업성 암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니켈, 카드뮴, 벤젠을 취급한 근로자에게도 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하도록 함.
- (3) 발암성 물질 취급 근로자의 건강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8조의2제1항, 제98조의3제2항, 제99조제1항, 제136조 제6항 및 별표 12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내용 안내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이 입법예고 되었기에 그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번호 : 건설교통부공고 제2005-313호
- 입법예고기간 : 2005. 10. 13 ~ 11. 2
- 관련문의 : 건설교통부 건설관리팀(Tel.02-504-9026/7)
- 전문참고 : 건설교통부(www.moc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개혁관계장관회의(2005. 2. 2.)에서 결정한「건설산업규제 합리화방안」에 따라 건설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건설현장내 시험실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건설공사의 건설시공을 유도하고 부실벌점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실벌점 부과내용을 공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실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완화

- (1) 품질시험을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공사규모(공사금액, 건축면적)별로 일률적으로 정한 시험실 규모 및 품질관리 인력에 대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
- (2) 총공사비 5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 품질관리자 3인 및 시험실 100제곱미터를 품질관리자 2인 및 시험실 50제곱미터 등으로 축소·조정함.
- (3) 품질검사전문기관의 품질시험 대행정도에 따라 시험실 및 품질관리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건설업체의 인력 확보에 대한 부담 경감효과가 기대됨.

나. 건설업자 등에 대하여 부실벌점 부과결과를 공개

- (1) 건설업자 등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결과를 공개하는 규정이 없어 부실벌점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였음.
- (2) 건설업자 등에 대하여 측정기관의 장은 부과결과를 즉시 공개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누계평균부실벌점이 1점 이상인 업체에 대하여 공개함.
- (3) 건설공사 등의 부실벌점 제도를 강화함으로써 부실시공 방지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 입법예고 내용 안내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이 입법예고 되었기에 그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번호 : 건설교통부공고 제2005-301호
- 입법예고기간 : 2005. 10. 4 ~ 10. 24
- 관련문의 :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주거환경팀(Tel.02-504-9136)
- 전문참고 : 건설교통부(www.moc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1. 개정취지

주택법이 일부개정(법률 제7335호, 2005. 1. 8. 공포, 2006. 1. 9. 시행)되어

주택성능등급 표시제 및 환기시설 설치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주택성능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주택의 규모 및 심사·평가방법을 정하고 환기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성능등급 표시대상 규정(안 제64조, 제65조, 제66조)

- (1) 공동주택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법률에서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안에 주택성능등급을 표시하도록 정함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평가 및 대상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2) 주택성능등급을 표시해야 하는 주택의 호수를 1,000세대 이상으로 하되, '06년부터 2년간은 2,000세대 이상으로 하는등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성능등급은 설계 도서를 대상으로 1내지 5등급으로 평가하며 성능등급 심사의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3)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자가 주택의 품질과 성능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미리 파악한 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국민에게 주택선택의 기준을 제공하고, 보다 질 좋은 주택이 건설·공급될 것으로 기대됨.

나. 환기시설 설치기준 규정(안 제44조제2항)

- (1)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의 원활한 환기를 법률에서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기시설을 설치하도록 정함에 따라 환기시설의 기준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 (2)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 설치하는 환기시설의 기술적인 기준은 건축법령(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 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 (3)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향상으로 새집증후군이 해소등 국민의 건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다. 보육시설 설치대상 확대(안 제55조제4항)

- (1) 500세대이상의 주택단지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에 따른 500세대 미만인 단지의 보육수요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저출산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가 있음.
- (2)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주택단지의 규모를 300세대이상으로 확대하고, 보육인원수도 단지의 규모에 따라 확대함
- (3) 저출산 및 고령화등 국가적인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됨.